

신고방법



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신고 (☎ 044-200-4646)
 (신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"민원참여" → "신고서식"에서 다운로드가능)

우편

·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95,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감시팀 담당처 앞

인터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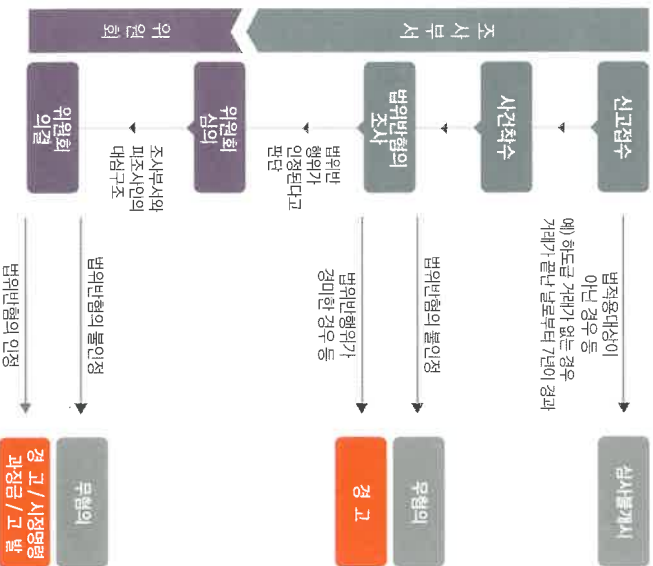
·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"민원참여" → "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" → "불공정거래신고"

익명제보도 가능해요!

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알림판 "기술탈취 익명제보" 배너 상담 | 044-200-4652

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등 부수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나, 제보된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, 결과 등의 통지 및 신고소속금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

사건처리 절차도



지속적인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

분쟁조정이란?

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조정인이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법

분쟁조정 의 효력

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

분쟁조정 사례

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전자기기 관련 기술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합의 조정

! 분쟁조정 신청방법 !

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.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(신청서는 누리집(www.kofair.or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)
2. 조정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
3.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(fairnet.kofair.or.kr)에서 분쟁조정신청

! 상담안내 !



분쟁조정 콜센터 : 1588-1490

상담시간 : (월~금) 09:00~19:00

무료법률상담(사전예약제)

중소영세사업자를 위하여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카카오특검채널에 '한국공정거래조정원' 검색 또는 QR코드 찍고 친구 등록



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·조정·상담 안내



공정거래위원회

